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정책을 수립·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평가대상, 시기,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 나. 예산관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미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대상) ①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시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구미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구미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중인 조례와 규칙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3.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구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③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구미시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담당국장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하여 평가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2,000
성별영향평가위원회	100,000원×10명×2회	2,000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계 박명희(054-480-5133)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최 동 문
	담 당	박 미 라
	담 당 자	박 명 희 (480-5133)